

아너스 웰가 진주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일정

■ 현장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4층, 지상 3~39층 4개동 총 840세대 중 일반분양 840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총 840대 중 55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 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 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5.22.(수)	청약home, 견본주택,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견본주택 개관	2024.05.24.(금)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06-2
특별공급 접수일자	2024.06.03.(월) [09:00~17:30]	인터넷 청약
당첨자 발표	2024.06.12.(수)	개별조회(청약home)
계약 기간	2024.06.24.(월) ~ 24.06.27.(목)	당사 견본주택

*모집공고일 등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공급 자격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대상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주가 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주택공급신청자는 동일함.)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무주택여부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의 ①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세대주 및 세대원 중)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②에 해당되는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청약통장 가입요건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 관련, 별표 2)

구 분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그 외 모든 지역 (경상남도 해당)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관계기관의 장이 우선순위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금융결제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산검색 확인결과 위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만일 소명 불가시 해당기관의 신청여부,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을 신청자 본인이 책임지므로, 해당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

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사항은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후 해당 접수일에 신청하여야 함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모집공고일 이후 인터넷 청약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

3. 신청시 구비서류

- 아래의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아래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 불가함.**
- 본인(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 추가)이외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으로 간주됨.
-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추천대상자에 한하여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신청자격 인정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또는 인증서, 추천명부로 접수
복무확인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무주택 서약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당사 견본주택 비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상세)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1통 추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특별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상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출입국사실증명서 1통 추가)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해당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주택공급 신청용, 청약자 본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4. 유의사항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가 신청일[2024.06.03.(화)]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인터넷 청약) 또는 견본주택(진주시 가좌동 606-2)에서 신청접수 하지 않을 경우 대상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 선정프로그램으로 배정됩니다.(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당첨자발표 이후 금융결제원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의 전산검색결과(주택소유여부 등)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당사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소명 불가 시 해당 기관의 신청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 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불가, 당첨자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그밖에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등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 사항은 2024.05.22(수) 공고예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관람 등 안내 사항 등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606-2
- 전화번호 : 055) 757-1004
- 홈페이지 : 대표 홈페이지 준비중

5. 참고자료

- 사업개요

사업지위치	진주시 가좌동 594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22,230.00㎡	6,724.5750 평
건축면적	12,101.60㎡	3,660.7340 평
연면적	지상	131,392.4447㎡
	지하	69,642.6603㎡
	합계	201,035.1050㎡
건폐율/용적률	54.43% / 583.86%	
조경면적	4,008.9000㎡	(1,212.6923평) /18.03%
주차대수	공동주택 1,384대(세대당 1.65대), 근린생활 156대 / 총 1,540대	
건축규모	지하 4층~지상 39층 총 4개동	
주택형 및 세대수	84A(36형) - 278세대, 84B(36형) - 280세대, 96(42형) - 68세대, 115(49형) - 214세대 일반분양 총 840세대	

■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 사업개요, 조감도 및 단지배치도는 이해를 돋기 위한 내용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오픈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문, 대표 홈페이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너스 웰가 진주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내역 및 추천양식**

■ 배정내역 (예비 500%)

주택형	세대별 면적(m ²)		신청자격별 공급세대수				
	전용면적	공급면적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애인
84A	84.49	121.40	8	3	4	5	7
84B	84.48	121.41	8	3	4	5	8
계			16	6	8	10	15
84A	84.49	121.40	40	15	20	25	35
84B	84.48	121.41	40	15	20	25	40
예비 계			80	30	40	50	75

※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상기내역은 분양승인 시 진주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상 주택평형은 세대별 공급면적(m²) * 0.3025로 산출

■ 추천양식 (예시)

주택형	순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
84A	1				
84B	1				
추천자 계	2				
84A 예비	1				
84A 예비	2				
84B 예비	1				
84B 예비	2				
예비추천자 계	4				

※ 반드시 추천 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미 지정시 타 기관 우선순위 지정자에게 우선배정됨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 배정이 불가할 수 있음)